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 7. 8.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26. 2. 27.~'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을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전단의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 식품 또는 축산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제5조제8호 전단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2026-49호, 2026.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